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56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윤한홍・박상웅・권성동

김상훈 • 박덕흠 • 최수진

박형수 · 권영진 · 박정하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를 제외하고 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 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 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험회사가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9조의2 등).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9조의2(의결권 제한 등) ① 제109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보험회사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보험회사는 제109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여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사 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 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09조 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할 것

제20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1호 중 "제109조"를 각각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결권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제109조에 따른 한도를 초 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109조의2(의결권 제한 등) ① 제109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보험회사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보험회사는 제109조에 따른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다른 회사가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를 완료하여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09조(과태료) ① 보험회사가 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략)
- 6. <u>제109조</u>를 위반하여 다른 회 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7. ~ 18. (생략)

- ② ~ ⑤ (생 략)
- ⑥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0. (생략)
- 21. <u>제109조</u>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제109소에 따든 한노에 석합
하도록 할 것
세209조(과태료) ①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
7. ~ 1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6
<u> </u>
1 90 (청체코 가수)
1. ~ 20. (현행과 같음)
21.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

 22. ~ 44. (생 략)
 22. ~ 44. (현행과 같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